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의결사항

산 업 안 전 보 건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등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및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국민이 일터의 산업재해 위험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공포(법률 제22122호, 2026.10.27.)됨에 따라,

안전한일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사용자 대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산업안전보건전문가로 구성함(안 제8조의2)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의3)

3)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고, 부위원장은 2명이며, 1명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다른 1명은 위원회가 선임(안 제8조의4)

4)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8조의5)

5) 전문위원회는 정책기획, 산업안전, 산업보건으로 하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특정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8조의6)

6) 기타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간사, 위원 수당, 운영세칙 등 규정(안 제8조의7부터 제8조의10)

나.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09조의3 신설)

1) 포상금 지급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와 포상금 지급 절차 규정(안 제109조의3제1항 및 제2항)

2) 포상금 부지급 사유와 착오 등의 오지급 시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게 5년간 지급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3)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109조의3제6항)

4)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 지급시기, 신고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위임함(안 제109조의3제7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1. 12. ~ 12. 22.),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11로 하고, 제8조의2부터 제8조의10까지 및 제10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안전한일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나. 재정경제부 제1차관
   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라.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4.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의3(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하고,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6(전문위원회)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정책기획전문위원회, 산업안전전문위원회, 산업보건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정책기획전문위원회: 산업재해 예방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전문위원회: 산업안전 관련 법·제도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보건전문위원회: 건강보호 및 신규 건강 유해·위험요인 대응에 관한 사항

③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나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특정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로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⑧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7(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제8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8(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의9(위원의 수당) 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9조의3(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 ① 법 제158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 중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
3. 법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 제55조제2항 또는 제119조제4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행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이미 있거나 이미 적발 또는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고용노동부에 고용된 근로자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5. 직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업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신고 내용에 위반행위의 일시·장소·대상 및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7. 신고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 발생 후 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8.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환수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간 포상금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⑥ 법 제158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금액, 지급시기, 신고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5조제53호를 제5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4호(종전의 제53호) 중 “제52호”를 “제53호”로 한다.

53. 법 제158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환수 및 지급 제한

부 칙

이 영은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안전한일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나. 재정경제부 제1차관 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라.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4.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8조의3(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8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하고,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1명을 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8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8조의6(전문위원회)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정책기획전문위원회, 산업안전전문위원회, 산업보건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정책기획전문위원회: 산업재해 예방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전문위원회: 산업안전 관련 법·제도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보건전문위원회: 건강보호 및 신규 건강 유해·위험요인 대응에 관한 사항 ③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나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특정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로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⑧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8조의7(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제8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8(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 설>	제8조의9(위원의 수당) 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8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 (생 략)	제8조의11 (현행 제8조의2와 같음)
<신 설>	제109조의3(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 ① 법 제158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 중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 3. 법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 제55조제2항 또는 제119조제4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행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이미 있거나 이미 적발 또는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고용노동부에 고용된 근로자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5. 직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

	체의 예산사업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신고 내용에 위반행위의 일시·장소·대상 및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7. 신고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 발생 후 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8.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환수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간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법 제158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금액, 지급시기, 신고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52의2. (생 략)	제115조(권한의 위임) ---------- ---------- ---------- ----------. 1. ~ 5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53. 법 제158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환수 및 지급 제한 54. ---------- -- 제53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997